

에 회복하였고, 7人으로構成된 倫理綱領制定特別委員會는 91年 4月 17일부터 4月 19日까지 3日間活動을 하였습니다.

특별委員會 委員長이신 韓鳳洙議員 나오셔서 審查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特別市瑞草區議會議員倫理綱領制定特別委員長 韓鳳洙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자리를 빌어서 지난 4月17일부터 4月19일까지 瑞草區議會議員倫理綱領制定特別委員會에 委嘱이 되시어 수고해 주신 特別委員님께 동안의 労苦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真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금 議員님께 配布된 이 油印物을 參考하셔서 저희 特別委員會에서는 最善을 다해서 關聯 專門法律家라든지 또 저희 倫理綱領制定特別委員會에서는 토씨 하나에까지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國語學者님들도 찾아뵙고 諮問을 구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각 議員님께 이 上程된 倫理綱領案이 얼마만큼 議員님들의 마음에 와 닿을지 저으기 두렵기도 합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特別委員會에서 制定했던 이 確定된 案을 오늘 각 議員님께서 審查熟考하시고 또 더 좋은 內容으로 改定도 可能한거니까 제가 簡略하게 報告를 드리고 또 이 綱領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계시면 저희 特別委員會에서 일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제가 이는範圍內에서 質疑에 答辯을 해드리는順序로 이 審議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油印物을 參照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瑞草區議會議員倫理綱領(案)制定 特別委員會審議報告書

1991. 4. 16 第2次 本會議에서 韩鳳洙議員의 發議로 上程되었던 區議會議員 倫理綱領(案)制定의 件은 金東運議員의 特別委員會構成動議案件 採擇으로 因하여 「瑞草區議會議員 倫理綱領(案)制定 特別委員會」를構成 特別委員 7名 (韓鳳洙議員外 6名)과 會期는 3日間으로 한다는 金守坤議長으로부터通知를 받고 다음과 같이 審議 議決하였음.

다음

- ①名稱：瑞草區議會議員 倫理綱領(案)制定 特別委員會

②日時：1991年 4月 17日 - 4月 19日  
(3日間)

③場所：區議會 特別委員會 會議室

④構成委員：	委員長 韩鳳洙 議員
	幹事 俞德相 議員
	委員 劉元奎 議員
	委員 金良子 議員
	委員 金東運 議員
	委員 鄭鳳均 議員
	委員 鄭雄燮 議員

2) 1991年 4月 17日 14:00에 特別委員長의 召集要求로 區議會 特別委員會 會議室에 委員 全員의 出席으로 3日間의 會期에 對하여

第1日은 原案에 대한 逐條審議를 하고

第2日은 第1日의 修正案을 가지고 關係專門家(法曹人, 國語學者)에게 委員 個個人이 探訪하여 諮問을 구하는 院外活動으로 하며

第3日은 完成된 (案)을 確定 議決하여 本會議에 上程하기로 合議함.

이에 第1日 '91. 4. 17. 14:00에 開會된 會議에서 議會議員倫理綱領(案)의 基本骨格을

1)提案理由 2)主要骨子 3)議員倫理綱領(案)으로

1項은 代表者로서의 義務

2項은 奉仕者로서의 義務

3項은 議員의 私的 義務

4項은 議政活動上의 公的 義務

5項은 代辯者로서의 義務에 두고 逐條審議를 한후 17:30에 停會 (委員 發言은 速記錄參照바람)

第2日 '91. 4. 18. 特別委員 全員은 제1일의 修正(案)을 가지고 院外活動을 하였으며

第3日 '91. 4. 19. 10:00 繼開된 會議에서 特別委員 7名 全員의 出席으로 別添과 같이 議會議員倫理綱領(案)을 滿場一致로 議決 採擇하고 本會議에 上程하게 되었음. (各委員發言은 速記錄參照바람)

3) 別添：1. 瑞草區議會議員 倫理綱領案(原案)

2. 特別委員會制定 瑞草區議會議員  
倫理綱領(案)  
1991. 4. 26.

瑞草區議會議員倫理綱領制定特別委員會  
委員長 韓鳳洙

瑞草區議會議員倫理綱領修正(案)對比表

항 목	원 안	수정안	비고
주 문	구민으로부터 <u>구정을</u> 위임받은… 발전과 <u>주민의 이익증진에</u> 이바지… … <u>서초구의원이</u> 준수할… 을 정 한다.	구민으로부터 의정을 위임받은…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 서초구의회의원이 준수할… 제 정한다.	수정 수정 삽입
1 항	인격과 <u>식견을</u> 함양하고	인격을 함양하고	삭제
2 항	오직 구민의 <u>자유와 복리증진을</u>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 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구민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을 위 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수정 삭제
3 항	<u>지위를 남용하거나 타인을 위하여</u>	직무와 관련하여	수정
4 항	우리는 <u>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u> <u>간에</u>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u>보장하고… 의회풍토를</u>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의정 활동상 의원 상호간 에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기 하고… 의회 풍토를 조성한다.	삭제 및 수정
5 항	우리는 <u>책임있는</u> 구민의 대변자로 서 <u>우리의 모든</u> 공적이거나 사적 인 행위를 함께 있어서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 동에 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 다.	삭제 및 수정

## 서울特別市瑞草區議會議員倫理綱領(代案)

提案年月日：1991年 4月 26日

提 案 者：서울特別市瑞草區議會議員  
倫理綱領制定特別委員長

## 提案理由

議員은 地民의 代表者인 동시에 地民을  
위하여 奉仕하는 公職者이며 모두가 議會의  
構成員인 동시에 責任 있는 代辦者라는 점을  
감안하여 議員이 地方自治法에 의하여 부여  
된 地位를 維持하고 그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議會에서는 人和로, 地政에 있어서는  
協力의 同伴者적인 입장에서 반드시 指向하  
여야 할 倫理的 指標를 地民 앞에 밝힘으로  
서 풀뿌리 民主主義의 發展과 議會의 名譽  
와 權威를 높이는데 寄與하고자 하는 것임.

## 主要骨子

- 議員은 地民의 代表者인 동시에 地民을  
위하여 奉仕하며
- 法에 의하여 賦與된 地位를 維持하고  
그 職務를 良心에 따라 遂行하며
- 民主主義의 發展과 地民의 利益增進에